

##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의결년월일	2000. 3. 3 (제77회)

제출년월일 : 2000. 2. 22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 8. 31 법률 제6002호 및 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이 2000. 1. 17 경기도로부터 통보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6일에 집회하기로 함(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2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6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②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감사) ①(생략)	제2조(감사)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u>정기회</u>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u>제1차 정례회</u> ..... ..... ..... ..
③~⑤(생략)	③~⑤(현행과 같음)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정의) ①(생략)	제2조(정의) ①(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회의수당</u> ”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u>회의수당</u> 을 말한다.	2. “ <u>회기수당</u> ”..... ..... <u>회기수당</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생략)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략)  
②~③(생략)

1. .....  
.....  
.....회기수당.....
2. .....  
.....회기수당.....  
.....
3.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